

# 소송과 사회

『두편신서(杜騙新書)』를 통해 본  
명말 소송사회의 실상

박소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조교수, 중국문학(한중비교문학) 전공  
sohpark@skku.edu

- I. 머리말: 소송사회론에 대하여
- II. 『두편신서』의 저작과 출판
- III. 『두편신서』의 세계: 소송과 사회
- IV. 맺음말

## I. 머리말: 소송사회론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최근 후마 스스무(夫馬進)와 같은 중국사 연구자가 제기한 '소송사회론'을 논의의 단초로 삼아 17세기 초 명말(明末)에 출판된 『두편신서(杜騙新書)』라는 흥미로운 범죄소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두편신서』는 허구적인 범죄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두편신서』가 다루는 세계는 다른 어떤 범죄소설보다도 현실적이며 구체적이다. 『두편신서』는 주로 복건(福建) 지방에서 활동한 상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횡행한 사기 범죄를 다루는데, 특히 사기꾼의 행태와 범죄 유형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이동경로, 그네들을 위한 실용주의적 지침 등을 세밀하게 묘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두편신서』는 명대 사회경제사 및 상업사 연구에도 상당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저작이다. 『두편신서』와 거의 일치하는 시기와 지역에서 다수 출판된 공안소설(公案小說) 장르처럼 이 책이 애매모호한 중간층 혹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했다기보다는 복건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한 다양한 '사상(士商)' 혹은 소시민 계층을 겨냥해 출판되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특히 그중에서도 상인계층의 관점에서 당시 상업 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 점을 고려한다면, 『두편신서』의 저자가 주요 독자층으로서 상인계층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많다.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공안소설과 비교할 때 『두편신서』가 '소송사회론'과 좀 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이 책이 다른 공안소설과 달리 살인사건 같은 심각한 형사사건보다는 상인이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크고 작은 사기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공자(孔子)가 실천하고자 했던 '무송(無訟)'의 이념과 함께 송사를 꺼리는 분위기는 유교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소송에 관한 한 『두편신서』가 주목한 상인계층은 공안소설에 흔히 등장하던 '향촌사회'의 사인층(士人層)이나 지주계급과는 약간 다른 입장에 있었다. 불안정한 상업 네트워크에 의존해야 했던 당시의 상인들은 『두편신서』가 묘사한 것처럼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 소송이 두려워 무조건 소송을 회피한 순박한 '향촌사회'의 일원은 아니었다. 소송사회론과 관련해 『두편신서』가 흥미로운 관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 있다.

페이샤오통(費孝通)이 중국의 농촌사회를 가리켜 '무송'의 '향토사회(鄉

土社會)라고 했지만<sup>1)</sup>, 현실적으로 무송의 이념은 관과 민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적 매개자의 존재 없이는 실현 불가능했다. 폐야오통이 관찰한 향촌사회도 비교적 변화가 적은 안정적인 농촌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 장로—즉, 이장(里長), 기로(耆老), 노인(老人) 등—나 향약(鄉約)이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어느 선에서는 정부의 개입 없이 자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후마 교수가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이러한 향촌사회 모델을 중국사회 전반을 이해하는데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특히 후마 교수 등이 최근 수년간 연구해온 중국 사천성당안관(四川省檔案館)에 현존하는 『파현당안(巴縣檔案)』의 예)에서 보듯, 전근대 중국사회에는 ‘무송사회’뿐만 아니라 ‘소송사회’도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사천성 파현은 이 지방 제일의 대도시 중경(重慶)을 에워싼 도시 근교의 인구밀집지역으로 새로 개발되던 지역이어서 타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후마 교수는 동치연간(同治年間, 1862-1874)의 파현을 이민자가 많았던 미국사회와 비교하고 있다. 미국이 소송사회가 된 주요 원인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이민자들로 구성된 사회라는 사실이었다.<sup>3)</sup> 이러한 환경은 불안정한 상업 네트워크에 의존해 방방곡곡을 누비며 낯선 사람들과 상거래를 해야 했던 객상(客商)은 물론이고, 도시에 거주하면서 객상을 상대하던 중개상인인 아인(牙人)—아행(牙行)—과 소매상인들이 경험한 사회 환경과 비교할 만하다. 불안정한 상업 네트워크 안에서 애초부터 신용에 의존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 데다, 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할 만한 중간자를 찾기도 어렵다면 당연히 상인들은 농민이나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소송에 더 의존했을 가능성이 크다. 『두편신서』의 저술 동기는 분명히 도시에 사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범죄와 소송—민사소송을 포함한—에 노출될 수 있는지

1) 費孝通, 『鄉土中國』(上海: 觀察社, 1948).

2) 『巴縣檔案』은 그 대부분이 소송문건들인데, 同治年間(1862-1874) 것만 추려도 약 1만 7,000건에 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파현의 연간 소송 건수를 계산하면 1,000건에서 1,400건에 달한다. 당시 파현의 호수는 12만 호로 추정되므로, 100호당 약 1건의 비율이 된다. 1건당 최소 원고와 피고 2호가 관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50호당 1건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 夫馬進 編, 『中國訴訟社會史の研究』(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1), 76-77쪽 참조.

3) 위의 책, 15-16쪽.

를 경고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를 거꾸로 읽어보면, 꽤 정확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이들의 모습에서 유교사회의 지배층이 그토록 강조하던 ‘무송’이나 ‘식송(息訟)’의 이념과는 거리가 먼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두편신서』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측면이다.

그렇다면 후마 교수가 본격적으로 제기한 ‘소송사회’란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며, 소송사회론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에 따르면 ‘소송사회’란 ‘litigious society’를 번역한 개념어로, ‘litigious’가 ‘소송하기를 좋아하는’이라는 뜻을 생각한다면 ‘호송사회(好訟社會)’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소송사회’의 대표적인 예라면 바로 현대 미국사회를 들 수 있다. 후마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소송사회는 “이 정도로는 소송이 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 한 시민이 재판에 이르는 것이 사례로 자주 나오는” 사회이다. 소송 건수와 변호사 수가 많은 것도 소송사회를 가리키는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사람들의 몸 가까운 일상적 존재라는 것이 소송과 재판에의 액세스(access)를 용이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 권리는 법이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 또한 그것은 민주사회이며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누구나 소송하는 것이 가능한 사회이다.<sup>4)</sup>

대표적인 소송사회인 현대 미국사회는 예전의 공동체가 붕괴되고 권리의식이 발달한 ‘법화사회(法化社會)’로 소송이 빈발하는 사회이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현대 미국사회의 대극에 위치한 사회가 구중국(舊中國) 사회라는 인식이 학계에서는 일반적이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전근대 중국사회는 민주사회라기보다는 전제지배(專制支配)가 행해지는 사회였고, 권리의식보다는 유교윤리에 의거하여 ‘무송’의 이념이 강요되는 사회였다. 따라서 형법이 발달한 반면, 민법의 존재는 미미하거나 아예 없다고 보기까지 했다. 그러나 명청(明清) 시기 ‘송사(訟師)’의 존재에 주목한 후마 교수의 연구<sup>5)</sup>를 비롯해 시가 슈조(滋賀秀三), 데라다 히로아

4) 위의 책, 4쪽.

5) 夫馬進, 「明清時代の訟師と訴訟制度」, 梅原都 編, 『中國近世の法制と社會』(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3) 참조.

키(寺田浩明), 필립 황(Philip C. Huang), 멜리사 맥컬리(Melissa Macauley) 등의 연구를 통해서 전근대 중국사회의 실상이 '무송사회'와는 거리가 먼 '소송사회'였으며, 지배층도 '청송(聽訟)', 즉 민사소송 처리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6)</sup> 『과현당안』을 비롯한 방대한 양의 자료의 발굴과 조사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sup>7)</sup>

후마 교수는 전근대 중국사회를 소송사회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sup>8)</sup> 첫째, 송대(宋代) 이후, 즉 10세기에서 11세기경부터 '건송(健訟)' 또는 '호송(好訟)'이라는 단어가 문헌에 자주 나타났다는 점이다. 둘째, 권리의식의 문제 또한 재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근대 중국사회에서는 확실히 권리라는 개념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권리의식 대신 정리(情理)에 호소하면서 소송에 의존하는 사례는 많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리의식은 권리의식과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 소송을 정당화했으며, 전제권력조차 이를 억압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증거 조작, 공갈, 무고(誣告) 등의 수법을 써서 허위로 소송을 일으켜 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도뢰(圖賴)사건이 자주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뢰의 사전적 의미는 '말썽이나 일을 저지르고 그 허물을 남에게 돌려씌움'이다. 도뢰사건은 단순한 무고가 아니라 살인사건을 조작해 살인죄를 죄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살인도뢰(殺人圖賴) 유형이 많았다. 이처럼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도뢰사건이 전통 시기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朝鮮)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도 『흙흙신서(欽欽新書)』에서 "살인사건의 절반이 도뢰사건"인데 이에 대한 인식과 처벌 규정이 미흡함을 날카롭게 지적했다.<sup>9)</sup> 이처럼 도뢰사건의 존재 자체는 과연 전제지배체제가

6) 滋賀秀三, 『中國法制史論集』(東京: 創文社, 2003)과 『清代中國の法と裁判』(東京: 創文社, 2009); 寺田浩明, 「權利と冤抑-清代聽訟世界の全體像」, 『法學』 61.5(1997); Philip C. Huang, *Civil Justice in China: Representation and Practice in the Qing*(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Melissa Macauley, *Social Power and Legal Culture: Litigation Masters in Late Imperial China*(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참조.

7) 예를 들면,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중국 법률문학(legal literature) 또는 관례사(case history)에 주목한 저서 *Writing and Law in Late Imperial China*도 중국이 소송사회였음을 대전제로 삼고 있다. Robert E. Hegel and Katherine Carlitz, *Writing and Law in Late Imperial China: Crime, Conflict, and Judgment*(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7), p. 4.

8) 夫馬進 編, 앞의 책(2011), 5-6쪽.

9) 정약용 저, 박석무·정해림 역주, 『역주 흙흙신서』 1(현대실학사, 1999), 57쪽. 『흙흙

소송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는지, 소송과 전제권력의 상관관계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킨다.

전제권력이 소송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현대 소송사회에 대한 분석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전제이다. 그러나 이는 비단 전통 시기 중국에만 해당되는 사실은 아니었다. 중국 법률을 받아들여 운용한 조선왕조에서도 18, 19세기에 와서 민간의 '호송' 경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졌고, 『민장치부책(民狀置符冊)』과 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로 민간의 소송이 일상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소송과 전제권력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전면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sup>10)</sup> 이는 또한 동아시아 소송사회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가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즉, 유사한 사법제도를 바탕으로 '무송'이라는 법률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던 전통 시기 중국과 조선사회에서 '소송사회'의 양상이 나타났다면, 과연 그 공통 원인은 무엇인지, 혹은 그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법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한편으로 후마 교수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공동연구에도 불구하고, 과연 동아시아 법문화를 이해할 때 '소송사회론'을 정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소송사회론이 전근대 동아시아사회를 '비(非)소송사회'로 보던 기존의 관점을 대폭 수정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현대 소송사회와 비교해볼 때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사천성 파현과 같은 소송사회가 있는 반면 폐야오통의 향촌사회가 존재한 것도 사실이라면, 지역적·시대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근대 동아시아사회 전체를 소송사회로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심각한 오류가 될 수 있다. 변호사를 내세운 대심제도(adversarial system)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전근대 동아시아사회를 소송사회로 간주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된다. 게다가 파현의 경우 50호당 1호의 소송인구 비율이라는 수치가 정말 현대 소송사회에 비교할 만큼 절대적으로 높은 것인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sup>11)</sup>

---

신서』에 실린 도뢰사건에 관한 고찰로는 서정민, 「『흙흙신서』의 도뢰 사례 고찰」, 『다산학』 20(2012. 6), 113-159쪽 참조.

10) 동아시아 소송사회의 관점에서 조선 후기 소송과 『민장치부책』을 분석한 연구로는 심재우, 「조선 후기 소송을 통해 본 법과 사회」, 『동양사학연구』 123(2013. 6), 87-119쪽 참조.

그러나 부정확한 통계 수치에만 의존하여 전근대 동아시아사회가 비소송사회였다고 단정하는 것도 너무 성급한 결론인 듯싶다. 중요한 것은 전체권력이 법률을 독점하는 한편 민간의 소송을 최대한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률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빈약하기는 하지만 남아 있는 소송기록을 통해서 무송의 이상을 강요한 유교적 전통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윤리적 부담과 사회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목표로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에게 법률은 과연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등의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전근대 동아시아의 소송사회적 특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귀족계급의 전유물이던 관습법(common law)을 부정한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은 법률을 대중을 위해 만들어지고 이용될 수 있는 인간적 기획(human enterprise)이라고 보았다. 제스로 리버먼(Jethro K. Lieberman)은 벤담의 생각이 ‘법률의 민주화’를 예고하는 획기적 발상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산업혁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sup>12)</sup> 이처럼 소송사회의 배경에는 자급자족적인 농업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 강화되는 산업사회로의 변화가 있었다. ‘법률의 민주화’ 문제는 여기에서 차치하고라도 송대 이후 중국이 도시화와 상업 및 화폐경제의 확대, 대규모 인구가동과 같은 커다란 변화를 겪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러한 경제적 변화가 소송사회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상업 및 화폐경제에 의존한 명말 도시민의 세계를 주요 무대로 그려낸 『두편신서』는 전근대 소송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확실히 주목할 만한 책이다. 『두편신서』의 세계는 리버먼이 말한 ‘상호의존성’이 강화되어가는 사회였으며, 향촌을 배경으로 한 폐쇄적·자급자족적 마을 공동체—마을 장로의 지도 아래 관아의 개입 없이, 혹은 관습에 의존해

11) 후마 교수의 공동연구 결과물인 『中國訴訟社會史の研究』를 정밀하게 분석, 비평한 박영철 교수에 따르면, 현대 미국사회의 好訟率은 말할 것도 없고 19세기 영국사회도 파현보다 훨씬 높은 호송률의 소송사회였으며, 심지어 비소송사회로 알려진 1970년대 일본사회조차도 40:1의 소송인구 비율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볼 때, 박영철은 파현의 호송률은 ‘중국만의 호송’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박영철, 「중국소송사회와 전제지배」, 『역사학보』 214, 2012. 6, 371쪽).

12) Jethro K. Lieberman, *The Litigious Society*(New York: Basic Books, 1983), p. 12.

법률을 의식할 필요조차 없이 살아가는 촌락의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였다. 소위 ‘향촌 질서’는 명초(明初), 즉 14세기 중국사회라면 몰라도 16, 17세기 중국사회를 규정하던 사회질서와는 거리가 멀었다. 유교적 지식인들의 눈에 명말 사회는 농업적 기반이 폐기된 반면, 부자나 빈민이나 탐욕에 눈이 멀어 무한 경쟁을 벌이면서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하극상’의 사회였다.<sup>13)</sup> 이러한 사회 변화가 바로 전근대 소송사회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가는 존재는 다름 아닌 상인, 특히 객상이었다. 그들은 유교적 농업사회의 폐쇄적 사회구조를 허물어뜨리며 부유(浮遊)하는 ‘부세적(浮世的)’ 존재였다. ‘부세’ 혹은 ‘floating world’라는 용어는 일찍이 도로시 고(Dorothy Ko)가 명말청초(明末清初) 강남사회(江南社會)를 가리켜 사용했다. 그녀는 일본의 우키요에(浮世繪)에서 따온 이 말이 여류작가들이 대거 출현한 강남의 상업적 출판문화를 매우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라고 보았다.<sup>14)</sup> 그런데 여류작가의 출현을 가능하게 만든 상업적 출판문화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 배경에는 상업적 출판시장을 활성화시켰던 시장경제와 화폐경제, 그리고 도시문화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유교적 ‘내외’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여류작가의 세계이기 이전에 전통적 삼강오륜(三綱五倫)의 가치관 혹은 ‘사상(士商)’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상인의 세계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인의 존재에 주목한 『두편신서』는 부세적인 상업적 출판문화에 가장 부합하는 산물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앞으로 『두편신서』에 실린 소송 이야기들에 초점을 맞추어 명말 소송사회의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덧붙여두고 싶은 것은 이 글이 후마 교수의 소송사회라는 개념을 빌리기는 했지만 후마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두편신서』를 통해서 소송사회론을 증명하려고 시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이 글에서는 논의의 실마리로 삼았을 뿐이며, 소송사회론에 대한 비판적 가능성은 열어두고자 한다.

13) 명대 사회의 상업화와 관련한 당시 지식인의 관점에 관해서는 Timothy Brook, *The Confusions of Pleasure: Commerce and Culture in Ming China*(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참조.

14) Dorothy Ko, *Teachers of the Inner Chambers: Women and Culture in Seventeenth-Century China*(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p. 30.



## II. 『두편신서』의 저작과 출판

『두편신서』의 원제는 『정각강호역람두편신서(鼎刻江湖歷覽杜騙新書)』이며, 존인당진회헌간본(存仁堂陳懷軒刊本)이다. 4권 24류 84칙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5)</sup> 또한 각 권의 첫 장마다 전면 삽화를 실었다. 그런데 제3, 4권에서는 표제가 『신각강호역람두편신서(新刻江湖歷覽杜騙新書)』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원본을 다시 판각하여 인쇄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로 보인다. 황린(黃霖)에 따르면, 초간본인 거인당간본(居仁堂刊本)은 현존하지 않고 후인본(後印本)인 존인당간본이 현존하는 최고본이라고 했다.<sup>16)</sup> 존인당간본의 저자는 장응유(張應俞), 절강인(浙江人)인데, 장응유에 대해서는 절강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사실이 없다. 따로 서문이 없는 이 간본은 미국 하버드대학 도서관과 일본 내각문고(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두편신서』는 1956년 리티엔이(李田意)의 『일본소견중국단편소설약기(日本所見中國短篇小說略記)』에 처음 수록되었으며, 오쓰카 슈고(大冢秀高)의 『중국통속소설서목개정고(中國通俗小說書目改訂稿)』(1984)에도 수록되었다. 1990년에는 『중국통속소설총목제요(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에도 수록되었다.<sup>17)</sup>

황린은 이 밖에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 동양문화연구소(東洋文化研究所) 쌍홍당문고(雙紅堂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을 소개했는데, 이 필사본에는 삼령산인웅진기(三嶺山人熊振驥)의 서문이 있다고 했다. 이 서문에는 저자인 장응유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이 책의 저술 시기를

15) 古本小說集成 卷224에 수록되어 있는 존인당간본의 영인본은 미국 하버드대학도서관 소장 판본이다. 『두편신서』의 역주본인 『新刻江湖杜騙術』도 동일한 판본에 근거하고 있다. 『두편신서』 목록은 총82칙을 수록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목록에는 제3권 拐帶騙에 「太監烹人服精髓」와 제4권 僧道騙에 「詐稱先知騙絹服」 등 2칙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래는 84칙이다. 그런데 제3권 姦情騙의 「地理寄婦脫好種」이 1題3則, 제4권 僧道騙의 「服孩兒丹詐辟穀」이 1題2則으로 구성된 사실을 고려한다면, 총88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상 張應俞 撰, 『杜騙新書』 古本小說集成 卷224(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張應俞 撰, 紀凡 譯註, 『新刻江湖杜騙術』(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5); 박명진, 「『杜騙新書』의 제재 유형과 저널리즘적 글쓰기」, 『동아인문학』 20(2011), 306쪽 참조. 참고로 고본소설집성 권224 서문에는 『두편신서』 목록에 83칙이 수록되어 있고, 누락된 것과 동일한 제목 아래 편입된 편수를 합치면 총89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필자가 직접 본문과 대조해본 결과 이는 완전히 편집자의 착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 黃霖, 「『杜騙新書』與晚明世風」, 『文學遺產』 第1期(1995), 92쪽.

17) 『두편신서』의 판본 문제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연구로는 牛建強, 「晚明短篇情小說集『杜騙新書』版本考」, 『文獻』 第3期(2000) 참조.

“만력정사년춘정월지길(萬曆丁巳年春正月之吉)”이라고 적었는데, 황린은 만력 45년(1617)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는 『두편신서』 팔류 노재편(八類 露財騙)의 「사칭공자도상은(詐稱公子盜商銀)」에 “만력 삼십이년계춘(萬曆三十二年季春)”이라는 구절이 있고, 이십류 매학편(二十類 買學騙)의 「은기점주피절도(銀寄店主被竊逃)」에도 “임자추(壬子秋)”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 특히 후자는 만력 40년(1612)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므로 “만력정사년”은 결국 만력 45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sup>18)</sup>

『두편신서』가 간행된 17세기 초 만력 연간은 바로 명말 공안소설 출판이 한창 성행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 책을 간행한 진회현(陳懷軒)－진공경(陳恭敬)이라고도 함－의 존인당은 당시 복건성(福建省) 건양(建陽) 지방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수백 곳에 달하던 서방(書坊), 즉 상업적 출판인쇄소 중의 하나였다.<sup>19)</sup> 존인당에서 간행한 서적으로는 『두편신서』를 비롯해 총 5종이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공안소설인 『신전국조명공신단상정공안(新鐫國朝名公神斷詳情公案)』(일명 『상정공안(詳情公案)』)이다. 당시에는 공안소설이 복건 지방에서만도 10여 종이나 쏟아져 나왔으므로, 『두편신서』가 공안소설의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두편신서』에는 『백가공안(百家公案)』과 『용도공안(龍圖公案)』에 나오는 이야기가 3편 수록되어 있으며, 『백가공안』과 『용도공안』의 주인공인 포공(包公)과 관련해 문언판례집인 『당음비사(棠陰比事)』에 나온 이야기를 싣고 있다.<sup>20)</sup>

18) 黃霖, 앞의 논문, 93쪽.

19) 福建·建陽 지방의 書坊을 연구한 루실 지아(Lucille Chia)는 명대 건양 지방의 서방만 336곳을 목록에 올리고 있다. 물론 존인당도 그녀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Lucille Chia, “Appendix B,” *Printing for Profit: The Commercial Publishers of Jianyang, Fujian (11th-17th Centuries)*(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2), pp. 286-306 참조.

20) 八類 露財騙에 실린 「炫耀衣妝啓盜心」은 뱃사공이 강도로 돌변해 승객인 상인 일행을 살해하는 이야기인데 『龍圖公案』 제1권 「夾底船」과 유사하다. 뱃사공이 범인으로 밝혀진 범죄 이야기는 『용도공안』 외에 『詳刑公案』과 『律條公案』, 『廉明公案』에도 수록되었다. 十六類 婚娶騙에 실린 「因蛙露出謀娶情」은 『百家公案』 53회 「義婦爲前夫報讐」, 『용도공안』 卷四에 실린 「岳州屠」와 매우 유사하다. 十五類 衙役騙 「吏呵罪囚以分責」은 유명한 包公(包拯)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인데, 이미 『棠陰比事』에 수록된 이야기이다.

표1-만명(晩明) 공안소설 10종

번호	제목	서지사항
1	新刊京本通俗演義增像包龍圖判百家公案	일명 『百家公案』 또는 『包公案』이라고 한다. 10권 100회, 上圖下文. 安遇時 撰, 만력 22년(1594) 與耕堂 간행. 日本蓬左文庫 소장
2	新鐫繡像龍圖公案	일명 『龍圖公案』. 명말 판본은 지극히 드물고 청대 판본은 20여 종에 달함. 10권 100칙. 四美堂 또는 雨余堂 간본. 北京大圖書館 소장
3	新刻皇明諸司廉明奇判公案	일명 『廉明公案』. 4권 105칙, 상도하문. 余象斗(1588-1609 활동) 撰, 만력 26년(1598) 建泉堂 간행. 『疑獄集』과 『蕭曹遺筆』 같은 판례집과 訟師秘本의 체제를 수용함. 다산의 『흠흠신서』에도 『염명공안』 사례 일부가 인용됨. 北京大圖書館 소장
4	全像類編皇明諸司公案傳	일명 『諸司公案』 혹은 『續廉明公案』이라고도 한다. 『염명공안』의 자매서. 6권 59칙, 상도하문. 여상두 찬, 三台館 간행. 『의옥집』의 체제를 모방하여 범죄의 종류에 따라 이야기를 人命·奸情·盜賊·詐僞·爭占·雪冤 등 6종으로 분류. 日本帝國圖書館 소장
5	新刻湯海若先生彙集古今律條公案	일명 『律條公案』. 8권 46칙, 상도하문. 陳玉秀 편, 만력 26년(1598) 師儉堂 간행. 日本內閣文庫 소장
6	新刻郭青壤(六)省聽訟錄新民公案	일명 『新民公案』. 4권 43칙. 楊百明 撰. 만력 33년(1604) 간행. 주로 『염명공안』과 『제사공안』 등에 실린 이야기 재수록. 國立臺灣大學 소장
7	新刻全像海剛峰先生居官公案	4권 71칙, 整版式 삽화 포함. 虛舟生 撰, 만력 34년(1606) 南京 萬卷樓 간행.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른 공안집과 『耳談類增』, 『折獄明珠』와 같은 문언소설집으로부터 채록됨. 北京國立圖書館과 北京大圖書館 소장
8	新刻名公神斷明鏡公案	일명 『明鏡公案』. 7권 중 3권은 일실되고 현재 25편만 잔존. 상도하문. 葛天民, 吳沛泉 撰, 泰昌·天啓(1620-1627) 연간 三槐堂 간행. 다른 공안집으로부터 채록한 이야기 재수록. 日本內閣文庫 소장
9	新鐫國朝名公神斷詳刑公案	일명 『詳刑公案』. 8권 40칙. 작자 미상. 만력 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연대는 미상이다. 寧靜子 撰, 상도하문.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른 공안집으로부터 채택됨. 國立臺灣大學 소장
10	新鐫國朝名公神斷詳情公案	일명 『詳情公案』. 陳君敬 撰, 天啓·崇禎(1620-1644) 연간 간행, 상도하문. 39편 중 22편만 잔존하며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상형공안』과 공유. 日本蓬左文庫 소장. 이 밖에 存仁堂 간행의 6권본 현존

그러나 『두편신서』는 공안소설의 출판이 왕성했던 만력 연간 건양 지방에서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안소설과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첫째, 범죄사건을 해결하는 판관 또는 수사관의 활약에 중점을 두는 공안소설 장르와 달리 『두편신서』는 주로 범죄의 피해자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다. 그들은 바로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는 포공과 같은 영웅이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보통사람들이다. 소설 속에서 이 평범한 주인공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어떻게 뜻밖에도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범죄에 희생되었는가 또는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해결하거나 극복했는가, 범죄의 예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서술하다 보니, 『두편신서』의 세계는 공안소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뒤틀린다. 이것이 바로 일찍이 패트릭 해닌(Patrick Hanan)이 명대 의화본소설(擬話本小說) 『삼언(三言)』의 연구에서 일컬었던 ‘항주 리얼리즘(Hangzhou realism)’의 세계였다.<sup>21)</sup> 공안소설은 범죄의 발생과 수사, 범인의 체포, 심문, 처벌이라는 형식에 중점을 두고 범조문이나 고소장 작성법 등 상당히 구체적이고 법률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공안소설의 핵심은 역시 ‘시적 정의(poetic justice)’를 추구하면서 권선징악의 도덕적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결국 악인은 처벌받고 무고한 희생자의 정의는 실현된다는 구도가 공안소설의 독자를 끌어들이는 가장 큰 이유겠지만, 공안소설의 현실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두편신서』에는 영원히 미궁에 빠진 범죄사건이 다수 실려 있다. 누구나 교활한 범죄자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럽의 청교도주의를 연상시키는 근검절약과 자기절제의 미덕뿐이다. 그것은 또한 불특정 다수를 위한 보편적 윤리라기보다는 상인계층을 비롯해 도시의 소비경제에 노출된 중간층을 겨냥한 구체적인 윤리적 지침이기도 하다.

둘째, 『두편신서』는 범죄 중에서도 대표적 경제범죄인 사편술(詐騙術), 즉 사기술의 다양한 유형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두편신서』는 84편(원래는 총88편)의

---

21) 해닌은 명대 중기, 즉 1450년에서 1550년 사이에 생산된 화본소설이 가족 중심적인 윤리와 실용주의, 물질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는 ‘항주 리얼리즘(Hangzhou realism)’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런 특징이 주로 항주와 같은 강남 도시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에서 발견된다는 이유로 ‘항주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Patrick Hanan, *The Chinese Vernacular Story*(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p. 60.

이야기를 24류의 사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에서 법정 장면이 삽입된 ‘공안’ 이야기는 31편에 달한다.<sup>22)</sup>

표2- 『두편신서』의 구성

번호	권수	유명(類名)	편수	내용	공안(소송) 관련 편명
1	권1	脫剥騙	8편	사기에 의한 다양한 절도 수법 소개	1. 假馬脫緹 2. 借他人屋脫客布
2		丟包騙	1편	사기를 통한 감쪽같은 절도 수법	
3		換銀騙	2편	은 바꿔치기 수법	
4		詐哄騙	4편	가짜 秘書, 秘牒을 이용한 사기 수법	
5		僞交騙	4편	친구를 사칭한 사기 수법	3. 激友訟奸以敗家
6		牙行騙	2편	문서 위조를 비롯한 牙行, 즉 중개상의 사기 수법	4. 狡牙脫紙以女僕 5. 貧牙脫蠟還舊債
7		引賭騙	3편	도박에 끌어들이는 사기 수법	
8	권2	露財騙	2편	재물을 과시한 실수에서 기인한 범죄의 폐해	6. 詐稱公子盜商銀 7. 炫耀衣妝啓盜心
9		謀財騙	4편	속임수로 상인의 재물 탈취	8. 傲氣致訟傷財命
10		盜劫騙	3편	사기 및 강도	9. 京城店中響馬賊
11		強搶騙	4편	사기 및 강도	10. 私打印記占鋪陳
12		在船騙	6편	배를 이용하는 객상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	11. 娶妾在船夜被拐 12. 買銅物被船謀死 13. 行李誤挑往別船 14. 腳夫挑走起船貨
13		詩詞騙	2편	선비, 도사 사칭 범죄	
14		假銀騙	2편	가짜 은 사기사건	
15	권3	衙役騙	3편	아역 관련 범죄	15. 入聞官言而出騙 16. 故擬重罪釋犯人 17. 吏呵罪囚以分責
16		婚娶騙	4편	결혼 사칭 범죄 (부녀자 범죄도 포함)	18. 婦嫁淘街而害命 19. 媒賺春元娶命婦 20. 異省娶妾惹訟禍 21. 因蛙露出謀娶情
17		奸情騙	5편	부녀자를 이용한 사기 행각	22. 奸人婢致盜失銀 23. 奸牙人女被脫騙
18		婦人騙	5편	부녀자 범죄	
19		拐帶騙	2편	유괴 및 어린이를 이용한 범죄 행각	24. 刺眼剔腳陷殘疾
20	권4	買學騙	6편	과거시험과 관련된 범죄	25. 空屋封銀套人搶 26. 詐秋風客以攬騙 27. 銀寄店主被竊逃
21		僧道騙	5편	승려, 도사 관련 범죄	28. 服孩兒丹詐辟穀 29. 信僧哄惑幾染禍
22		煉丹騙	3편	불사약 사기사건	30. 信煉丹貽害一家
23		法術騙	3편	도술을 이용한 사기 행각	31. 摩臉賊拐帶幼童
24		引嫖騙	1편	기생 관련 범죄	

22) 좀 더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박명진, 앞의 논문, 309-311쪽 참조.

물론 다른 공안소설에서도 사기범죄가 소개되었다. 특히 여상두(余象斗)의 『염명공안(廉明公案)』에서 '사위(詐僞)'라는 조목 아래 사기범죄를 소개했고, 이후 『염명공안』의 체제를 수용한 『제사공안(諸司公案)』 등에서도 유사한 조목 아래 사기범죄를 소개했다. 다만 이들 공안집에서는 『두편신서』처럼 한 범죄 유형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점은 대개 살인사건인 인명(人命)사건에 있었다. 인명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강도, 강간 등 대부분의 범죄가 심각한 형사사건이며, 따라서 형사법정의 묘사에 중점을 두게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은 특히 『포공안』에서 두드러지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살인사건이다. 반면, 『두편신서』에는 민사법정에 해당하는 '청송'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 또한 다른 공안소설과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이다.

셋째, 『두편신서』의 많은 이야기가 복건 지방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다. 『두편신서』에서 복건 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는 27편에 달해 가장 많고, 그다음이 남경(南京)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로 9편이다. 이 밖에 소주(蘇州), 항주(杭州), 양주(揚州) 등 대도시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모두 5편이다. 그러나 『두편신서』에 수록된 이야기 88편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43편에서 이야기의 배경이 불분명한 점을 고려한다면, 그 배경이 명확하게 묘사된 나머지 이야기들에서 복건 지방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이야기들에 비해 복건 지방의 이야기에서 현장성과 일상적 사실성이 확실히 두드러진다는 점인데, 이런 특성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 중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편에서 객상, 아인, 점포주인 등 상인계층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복건의 여러 지역—특히 복건 건녕부(建寧府) 주변—과 이 지역들을 드나드는 객상의 노정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복건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은 아마도 저자가 이곳에서 상인계층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볼 만하다.

표3-『두편신서』에 묘사된 등장인물들의 신분

신분/직종	상인(객상·아행·도매상·소매상·행상)	사인층(과거응시생 포함)	종교인(승려·道士·方士)	관료	아역	지주	기타
편수	33	13	15	5	6	3	13

물론 『두편신서』의 모든 이야기에 상인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상인은 전체 88편 중 33편에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포공안』 같은 다른 공안소설의 중심인물은 대부분 신사층(紳士層) 또는 지주계급이었고 대개 농촌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주목할 만한 특성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 표3의 '기타' 직종에는 당시 도시에 기반을 둔 상업적 자본주의의 발달을 반영하는 직종이 다수 포함된다. 은본위 화폐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은장(銀匠), 상인과 함께 유통경제를 이끌어갔던 각부(脚夫)－짐꾼－와 초부(梢夫)－뱃사공－, 도시에서 전당업과 숙박업, 그리고 상당한 수익사업이었을 매춘과 도박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두루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송사를 일으켜 먹고사는 '송곤(訟棍)'과 같은 존재도 빠질 수 없는데, 그들은 도시의 '흑사회(黑社會)'를 구성하면서 일종의 '계층'을 형성했던 다양한 '무뢰(無賴)' 중의 하나였다.<sup>23)</sup> 이런 점에서 볼 때 『두편신서』는 독자로 하여금 당시 도시에 바탕을 둔 상업적 환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두편신서』는 일찍이 문학사가보다도 역사학자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일본 학자 아다치 게이치(足立啓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아다치 교수는 『두편신서』가 실화가 아니라 허구적 소설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지만, 『두편신서』를 통해서 명말의 유통구조가 비정형적(非定型的)이었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분석해냈다.<sup>24)</sup> 『두편신서』가 상인을 비롯한 소시민의 일상을 충실하게 재현한 책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 필자는 『두편신서』에 실린 공안 이야기 31편 중 '소송사회'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23) 오금성, 「무뢰」, 『명청시대 사회경제사』(이산, 2007), 373-399쪽 참조.

24) 足立啓二, 「明末の流通構造: 『杜騙新書』の世界」, 『文學部論叢』 41(熊本大學文學會, 1993), 31-57쪽.

### Ⅲ. 『두편신서』의 세계: 소송과 사회

#### 1. 상인과 소송

장패(張沛)는 휘주(徽州) 휴녕(休寧)의 대상(大商)이었다. 그는 수천 냥의 은자를 자본으로 하여 과주(瓜州)<sup>25)</sup>에서 면화를 샀다. 습현(歙縣)<sup>26)</sup>의 유흥(劉興)은 십년이 넘도록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타향을 떠도는 가난한 보부상이었다. 그는 칠십여 냥의 자본으로 같은 가게에서 면화를 샀다. 장패와 유흥은 서로 말이 같은 동향인 줄 알고는 쉽게 의기투합하여 호형호제하며 함께 복건성으로 갔다. 그들은 복건성의 아인 진사(陳四)의 가게에 머물며 면화를 팔았다. 유흥은 며칠 만에 면화를 다 팔았지만, 장패는 반도 못 팔고도 오백여 냥의 은자를 벌었다. 은자가 탐난 유흥은 비슷한 처지의 조동(趙同)과 짜고 장패의 은자를 훔쳐 배로 달아날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장패가 없을 때 은자를 훔친 유흥은 친척을 따라 해징(海澄)<sup>27)</sup>으로 간다는 말을 진사에게 남기고는, 그는 남대(南臺)<sup>28)</sup>에서 조동이 구한 배를 타고 들어가 한적한 암자에 숨었다.

이 이야기는 구류 모재편(九類 謀財騙) 「도상화재반상재(盜商伙財反喪財)」의 전반부를 요약한 것이다.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아인 진사는 유흥이 굴을 파서 옆방에 투숙한 장패의 은자를 훔쳐 달아난 사실을 밝혀낸다. 진사는 유흥 일행을 추적해 그들이 숨어 있는 암자를 급습한다. 유흥 일행은 진사의 가게로 붙잡혀 와서 해징에 갔다 온 장패를 만난다. 진사가 유흥을 관아에 넘기기를 종용했지만, 장패는 그가 동향임을 생각해 풀어준다. 장패는 그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은 닷 냥까지 챙겨주었지만, 유흥은 끝내 진사에게 빼앗긴 본전 70냥은 찾지 못했다. 화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노리다가 오히려 수십 년 모은 재산을 다 잃은 어리석음을 한탄하는 한편, “상인들은 반드시 신중해야 함을 알리니, 이처럼 동향임을 내세워 도둑으로 돌변하는 이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而因告商者之宜慎, 勿如鄉里之爲盜者誤也)”<sup>29)</sup>고 경계한다.

25) 오늘날 甘肅省 敦煌 서쪽을 가리킨다.

26) 오늘날 安徽省 歙縣으로, 徽州府에 속한다. 休寧도 휘주부 관할 현이었다.

27) 오늘날 복건성 龍海.

28) 복건 福州의 閩江 중류에 있는 釣臺山을 가리킨다.

29) 張應俞 撰, 앞의 책(1994), 112쪽.



이 이야기에 소송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당시 상인들의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장패와 유흥은 휘주 객상인데, 돈황까지 가서 면화를 산다. 그들은 돈황에서 산 면화를 팔기 위해 남쪽의 복건에 온다. 이처럼 객상의 이동경로는 돈황에서 복건으로, 때로는 운남(雲南)에서 사천(四川)으로, 때로는 광둥(廣東)에서 소주(蘇州)로 상당히 광역적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다 보니 유흥처럼 10년이 넘도록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객지를 떠도는 상인도 있을 만큼 객상에게는 상당히 오랜 기간 외지에 체류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객상이 다루는 상품도 상당히 다양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면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밖에 생사, 면포, 종이, 쌀, 철, 주석, 약재에 이르기까지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이든지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0)</sup>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대상(大商)－대고(大賈)－과 소상(小商)－소고(小賈)－사이의 극명한 대립이다. 장패처럼 자본금이 수천 냥에 달하는 대상이 있는가 하면, 유흥처럼 수십 냥의 자본만 가지고 붓집장사를 하는 소상도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같은 가게에서 면화를 구입했으며, 구입한 면화를 가지고 함께 여행하면서 같은 아인의 가게에 투숙하기도 한다. 대상이라고 해서 특권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며, 그들을 위한 특별한 사회적 안전망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다. 대상이나 소상이나 혼자서 여행하고 동일한 이동경로와 판매행위의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이 불안정한 유통망을 연결하던 객상의 취약한 사회조건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들은 동등하다. 객상은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시세 차익을 노리다 보니 언제나 고정된 거래처만 이용할 수 없었다. 현지 사정에 어두운 객상과 그들이 상품 판매를 의뢰하는 중개상인 아인 사이의 관계도 고정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이 때문에 객상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을 아인이 주도하는 경우도 적잖았다.

30) 명청 시기 상인들 중에는 徽州, 蘇州, 山西, 福建처럼 유독 상인의 활동이 활발한 지방 출신의 상인들이 상권을 장악했고, 지방에 따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품도 있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傅衣凌, 『明清時代商人及商業資本/明代江南市民經濟試探』(北京: 中華書局, 2007) 참조. 또한 아다치 교수의 논문에 실린 客商行動一覽表 참조. 이를 통해서 『두편신서』에 등장하는 객상들의 출신지와 구매지 및 판매지, 상품과 자본금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足立啓二, 앞의 논문, 43쪽).

선박과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상품을 직접 수송하고 위탁판매를 하는 객상에 의존한 당시의 상업경제는 유통과 판매가 분리되지 않은 원시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원형적 상업경제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갖고 있었다. 당시의 상업경제가 열린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개방적 시장 구도에서 객상들이 무한한 자유경쟁을 전개했음을 의미하며, 반면 상행위를 규제하고 동업자를 보호하는 단체조직의 존재는 미미했음을 의미한다. 동업단체의 규범도 그것을 전제로 한 행정력의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인의 사회는 조직적 신용이 결핍된 사회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활동은 지극히 불안정하고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sup>31)</sup> 불안정한 유통망 속에서 지속적인 거래를 기약할 수 없었던 객상은 현지위탁판매 중개상인 아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인 또한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다.

당시에 상업서가 활발하게 간행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명말에 출간된 상업서 중에서 현존하는 전문적인 상업서는 모두 6종에 이른다.<sup>32)</sup> 이 책들은 객상의 노정, 상품에 관한 지식, 가치 동향, 생산지와 소비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 등을 전달하고 있는데, 파편화되고 일회적인 상행위가 일반적이었던 객상에게는 매우 귀중한 일용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명말에 출간된 상업서의 저자는 개인적 신용을 공고히 하고 상도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익의 추구나 법 또는 소송에 의존하는 것은 경제 환경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sup>33)</sup> 이런 점에서 볼 때 『두편신서』도 상업서의 윤리적 경향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즉, 『두편신서』의 목적은 결코 소송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었다. 앞의 이야기에서도 남의 재물을 탐하다가 자신의 재산마저 탕진한 유홍의 어리석은 탐욕을 상인들의 경계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편신서』가 무조건 소송을 피하는 것이

31) 足立啓二, 위의 논문, 52쪽. 사실 명대 초기부터 객상의 동업단체라고 할 수 있는 會館과 公所가 발달하고 19세기에 가면 公行으로 발전하기도 했지만, 『두편신서』에서는 동업단체의 활동에 대한 묘사가 매우 미미하다. 상인들의 집단화 경향에 대해서는 이화승, 「상업」,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555-577쪽; 唐力行, 『商人與中國近世社會』(北京: 商務印書館, 2003), 90-106쪽 참조.

32) 홍성화, 「명대 후기 상업서를 통해서 본 객상의 윤리의식-『士商類要』·『客商一覽醒迷』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56(중국사학회, 2008. 10), 129-169쪽 참조.

33) 위의 논문, 146-154쪽.

상책이라고만 가르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간접적으로나마 상인들이 불가피하게 범죄나 분쟁에 노출되었을 때는 오히려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례로 팔류 노재편 「사칭공자도상은(詐稱公子盜商銀)」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진동(陳棟)은 산둥(山東) 사람인데 매년 복건 건양의 장경(長埂)이라는 곳에 옷감(機織布)을 사러 갔다. 만력 32년(1604) 3월 그와 하인 두 명이 일천 냥이 넘는 은을 가지고 장경에 옷감을 사러 갔다가 길에서 사기꾼을 만났다. 사기꾼은 그의 은자를 노리기 시작했다. 다만 진동이 노련한 객상으로 엄밀히 경계하는 것을 보고, 어설피 헤서는 어려운 일임을 단박에 알아챘다. 사기꾼은 복건분순건남도(福建分巡建南道)<sup>34)</sup>의 공자라 사칭했다. 그는 자못 위엄 있는 늙은 풍채를 갖추고 하인 네 명과 함께 나타나 진동이 투숙한 여관에 묵었다. 사기꾼과 진동은 서로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그런데 강서(江西) 연산현(鉛山縣)의 현승(縣丞) 채연(蔡淵)은 광둥(廣東) 사람인데, 순도와 같은 부(府) 출신이나 현은 달라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사기꾼이 현승에게 인사하러 가자, 현승은 그에게 답례로 술과 음식을 보냈다. 진동은 현승이 답례하는 것을 보고 그를 공자로 믿었다. 이날 밤 사기꾼은 답례로 받은 술과 음식으로 진동을 초대했으나, 진동은 여행 중이라 경계를 풀지 않았다. 이튿날 사기꾼도 진동과 같은 마을에 묵자 진동이 답례하고 싶었으나, 작은 마을이라 살 만한 것이 없었다. 셋째 날, 숭안현(崇安縣)에 묵게 되었다. 진동은 숭안현이 장경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드디어 경계를 풀고 공자와 이별하기 전에 크게 답례하리라 마음먹었다. 사기꾼이 이별 운운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켜 다들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하인들도 모두 곤히 잠들었고, 진동도 술에 취해 탁자 위에 뒹아떨어졌다. 사기꾼이 진동의 재물을 모두 훔쳐 달아나니, 진동이 깨어났을 때에는 이미 사기꾼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다.

진동은 숭안현에는 여관 주인을 공범으로 고발하고, 강서(江西) 광신부(廣信府)에 연산현 현승도 한패로 고발했다. 현승은 “복건순도와는 같은 부 출신이나 만난 적은 없다, 그쪽에서 먼저 인사하러 오는데 말단 관리에 불과한 현승이 어떻게 답례하지 않을 수 있는가, 게다가 숭안현에서 며칠 뒤에 벌어진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며 하소연했으나, 진동은 사기꾼과 서로 아는 사이로 오해했으니 현승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광신부에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니, 진동은 사대순(史大巡)에게 다시 상소했고, 사대순은 현승이 객상을 오해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은자 일백 냥을 주어 진동이 귀향하는 여비에 보태도록 했다.

객상 진동은 사건을 관아에 고발하고 소송에 의존했지만, 결국 진범을

34) 명칭 시기 省·府에 설치한 감찰구역을 일컬어 道라 한다. 按察使의 보좌관이 各道の 刑名을 따로 담당했는데 이를 分巡道라 한다. 建南道는 복건성에 설치한 감찰구역의 하나.

잡을 수는 없었다. 화자가 진동과 같은 객상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끝까지 경계를 풀지 않아야 한다는 것뿐이다. “나는 상인이라면 누구나 시종일관 신중하게 처신하길 바란다(吾願爲商者處終如慎始可也).”<sup>35)</sup> 그런데 진범을 잡지는 못했지만 진동의 적극적인 대응은 ‘소송사회’의 측면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진동은 우선 여관 주인과 현승을 용의자로 지목한다. 말단 관리라도 현직 관리를 피의자로 고소해 소송에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주인공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판결이 나지 않자 그는 다시 서슴없이 상소했으며, 결국 여비나마 챙기는 데 성공한다. 현직 관리를 상대로 일개 상인이 대등하게 소송을 벌이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것, 원고가 피의자의 과실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없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리’ 차원에서 부분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명청 시기 중국의 ‘소송사회’의 특성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의율(擬律)’만큼이나 ‘정리’ 차원에서 송사를 처리하는 유교적 법정의 관행이 오히려 소송을 부추겨 ‘무송의 유교적 이념과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sup>36)</sup>

객상이 경계해야 할 대상은 사기꾼만이 아니었다. 상품의 유통과 분배를 담당했던 각부, 뱃사공, 중개상 아인 등이 모두 경계 대상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교아(狡牙)’는 무뢰배인 ‘협棍(俠棍)’보다도 악질이며 강도에 비견할 만한 존재였다.

강탈과 사기의 폐해 중 으뜸이 무뢰배이며, 그다음이 교활한 아인(狡儉)이다. 무뢰배는 음모를 꾸며 몰래 빼앗으니, 이는 절도이다. 교활한 아인은 재화를 편취하면서도 뻔뻔하게 물건을 팔아먹으니, 이는 강도짓에 해당한다. 양자는 마땅히 도적과 같은 죄목으로 다스려야 한다(脫騙之害, 首俠棍, 次狡儉. 俠棍設局暗脫, 竊盜也; 狡儉騙貨明賣, 強盜也: 二者當與賊同科).<sup>37)</sup>

이 이야기에서 아인은 800여 냥에 이르는 객상의 종이를 팔아 자신의

35) 張應俞 撰, 앞의 책, 102쪽.

36) 특히 민사법정에서情理에 의거한 심리의 관행에 관해서는 滋賀秀三, 『清代中國の法と裁判』(東京: 創文社, 2009), 263-304쪽 참조.

37) 六類 牙行騙 「狡牙脫紙以女償」, 『杜騙新書』 74쪽.

채무를 갚는 데 써버린다. 대금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다 객상의 물품 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아인은 몰염치하게도 자신의 딸을 객상에게 첩으로 넘기는 조건으로 횡령 사실을 무마한다. 「빈야탈납환구채(貧牙脫蠟還舊債)」란 이야기에서도 채무에 시달리던 아인이 의뢰받은 객상 장패(張霸)의 상품으로 자신의 빚을 청산한다.<sup>38)</sup> 이 이야기에서도 객상이 피해자가 되어 한바탕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데, 장패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피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소송을 준비한다. 그는 장부나 현물 등의 증거를 모으는 한편, 뇌물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결국 장패는 승소해 아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소송사회’와 관련하여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장패가 고소장을 제출했을 때 그 고소장을 바닥에 내던지며 수리하지 않던(看狀擲地不准) 판관이 원고가 ‘재삼애고(再三哀告)’하자 결국에는 고소장을 수리했다는 것이다. 당시 지배층이 소송을 무조건적으로 억압하지 않았던 측면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상인의 미덕은 겸손이다. 구류 모재편 「오기치송상재명(傲氣致訟傷財命)」은 교만한 상인이 어떤 말로를 맞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위방재(魏邦材)는 광동 객상으로 광동성 전체에서 제일가는 부자였다. 사람됨이 교만하여 돈이 많다고 스스로 자랑하기를 일삼았다. 어느 날 그는 호주(湖州)에서 비단 일백 짐(일만 근)을 사서 광동성에서 팔 계획을 가지고 항주에서 큰 배를 탔다. 배에는 객상 2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나 부양현(富陽縣)에 며칠 머물게 되었다. 그의 하인은 배에 탄 다른 승객들과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다투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함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방재의 오만함도 너그럽이 봐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하인조차 주인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위방재로 말하자면 하인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하인을 감싸며 여러 번 불쾌한 말을 내뱉었다. 또한 “이 배에 실은 물건을 나 혼자 다 살 수 있다”며 큰소리치니 모든 사람이 그를 매우 싫어했다.

이때 배에는 왕봉칠(汪逢七)이라는 휘주(徽州) 사람이 있었는데 거족현환세가(巨族顯宦世家) 출신이었다. 그는 위방재가 재력을 빌미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세를 부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위방재는 그가 자신과 감히 맞붙는 것에 노하여 욕하자, 둘 사이에는 말다툼이 이어졌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다툼을 지켜보며 은근히 즐거워했다. 다행히 왕봉칠을 아끼는 사람이 둘의 싸움을 말리자 각자 선창으로

38) 六類 牙騙驢 「貧牙脫蠟還舊債」, 『杜騙新書』.

들어갔다. 이튿날 이한경(李漢卿)이라는 사람이 왕봉철을 편드는 이야기가 위방재의 귀에 들어갔다. 위방재가 이한경을 욕하고 왕봉철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방재는 참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고 여러 사람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러자 봉철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나를 도와 내가 그와 대적하기를 기다린다면 여러분의 원한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비단 일백 짐이 있는데, 내가 그를 죽도록 때릴 때까지 여러분은 지켜봐 주십시오. 그는 반드시 고소할 것입니다. 내가 그의 비단을 반만 남기고 다른 곳에 숨겨놓고서 그와 소송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장부도 모두 불태울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를 고소한다면 여러분들은 흩어지지 말고 증인으로 법정에서 출두해주십시오. 그의 비단을 팔아 소송 비용으로 쓸 것입니다. 구타로 인한 소송으로는 인명에 관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있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그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분풀이하길 원했다.

서로 상의를 끝내자 봉철은 방재와 배 위에서 주먹다짐을 했다. 위방재는 크게 불리해지자 관아로 달려가 고소했다. 이 기회를 틈타 왕봉철은 방재가 산 비단의 반을 다른 곳에 숨겨놓았다. 그리고 그 장부와 세표(稅票)를 모조리 불태우고는 은밀히 물건을 중개상인에게 팔아넘겼다. 방재가 배로 돌아와서 비단이 없어진 것을 보고는 즉시 왕봉철이 비단 오십 짐을 훔쳐갔다고 다시 고소장을 썼고 뱃사공을 증인으로 세웠다. 왕봉철은 머리에 돼지피를 바르고는 두 사람에게 부축을 받아 관아에 출두해 인명사건으로 고소했다. 그러고는 즉시 현청 징세관(徵稅官)의 문객에게 은자 일백냥의 뇌물을 썼다. 그 문객은 바로 괘(霍) 현령 나리의 외삼촌이었다. 위방재 또한 은자 일백오십냥을 진사(進士) 위현(魏賢) 등 아홉 사람에게 뇌물로 보냈다. 봉철도 은자 이백냥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냈다. 심리가 시작되어 뱃사공 등이 일제히 사실임을 호소했지만, 실제로 비단 옮기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다. 현령은 비단을 옮긴 정황이 불분명하고, 서로 싸운 일도 쌍방의 증언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방재는 이에 불복해 본부(本府) 관아에 다시 고소했다. 본부의 진지부(陳知府) 나리가 심리를 맡게 되자 두 사람 모두 뇌물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건을 원심대로 판결하도록 현청으로 돌려보냈다. 위방재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대순(大巡), 군문(軍門), 사도(司道)에게 고소장을 냈고, 심지어 남경(南京) 형부(刑部)에도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장은 원래 이야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고, 관부에서는 모두 원심대로 판결했다.

두 사람의 소송이 일 년 남짓 계속되는 동안 위방재는 남아 있던 비단 오십 짐의 은자를 모두 써버렸다. 그는 소송을 도와달라고 친형을 불렀으나, 그가 갖고 온 오백여냥의 은자도 순식간에 다 써버렸다. 게다가 위방재는 여관에서 병까지 나서 숙부가 직접 그를 보러 왔다. 숙부는 충직하고 너그러운 어른이었는데, 일의 자초지종을 듣고는 그의 조카가 사람됨이 거만하여 이런 화를 자초했음을 깨달았다. 주위 객상들도 모두 말하길, “이 일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원만하게 담판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각각 은자 일백냥을 내어 관부에 보내 이 사건을 종결짓도록 했다. 그리고 다시 오십냥을 방재에게 여비로 주면서 집에 돌아가게 했다. 위방재가 집에 돌아와서 여러 날 겪은 일을 생각해보니, 돈을 수없이 쓰고도 결국 빈손으로 돌아온 셈이라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었다. 게다가 온 집안사람들의 비난과 힐책까지 받게 되니

더욱 울컥한 기분을 다스리지 못해 몇 달 뒤에 심한 중기가 생겨 죽었다.

위방재는 성격이 지극히 극단적이고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바깥에 나가 상업에 종사했지만 우물 안 개구리나 다름없이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며 남을 배려할 줄 모르더니, 결국 다른 사람들의 원한을 사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겸손하면 이익이 생기고 오만하면 손해를 불러들인다’는 옛말은 사람들이 모두 잘 안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타지에 여행가는 일이 잦고 타향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니, 항상 중도에 맞게 단정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이처럼 장사 이외의 번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인데, 어떻게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는가?

누구나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분명하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물론 소송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이지만, 왕봉칠 같은 인물은 오히려 소송을 이용해 상대방을 곤경에 빠트려 자신의 원한을 갚고자 했다. 왕봉칠은 위방재의 물건을 훔쳤지만 그의 장부와 세표(稅票)를 불태워 증거를 없애버리자, 소송은 결국 지리멸렬해지고 판결이 나지 않는다. 이처럼 『두편신서』의 화자는 소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지만, 정작 『두편신서』에 묘사된 소송당사자들은 소송을 꺼리지도 소송절차에 무지하지도 않았다. 객상 진동과 장패의 경우처럼 무조건 소송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기도 한다. 마치 공안소설이 그러하듯이 『두편신서』도 범죄와 소송의 부정적 측면을 경고하는 교훈적 기능과 함께, 한편으로 법률지식을 포함한 일반 상식을 전달하는 기능에도 충실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소송사회

마을에 용가성(龍家姓)을 가진 조민(刁民)－간교한 백성－이 살았는데, 법률을 넘나들며 백성을 속이고 압박했다. 그가 간교하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멀리서도 그를 피해 갔다. 어느 날 그는 부(府)에 가려고 배를 탔다. 그가 먼저 타고 자리를 잡았는데, 나중에 배를 탄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배 안에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누군가 갑자기 최근에 안원(按院)－제형안찰사(提刑按察使)－이 무뢰배를 체포한 일을 이야기했다. 그중에 성이 구씨(丘氏)인 짚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용씨가 배에 탄 줄 모르고 말했다. “듣자니 우리 현에는 용오(龍五)라는 자가 최고 악당인데, 그를 알고 지낸 사람들 중에 그에게 사기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만일 안원이 이 인간을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 백성들은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요.” 용오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냉소했다. ‘네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내가 악당이라니, 안원이 나를 잡아갔으면 좋겠다니 하며 떠드느냐? 내가 만일 그에게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면 나는 억울하게 악당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 그는 구씨가 상당히 좋은 침구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목도장을 꺼내어 침구 안쪽 흰 천에 몰래 도장을 찍었다.

황혼 무렵 배가 도착하자 각자 짐을 챙겨 떠났다. 악당 용오는 몰래 구씨 뒤를 따라가다가 부의 관아에 다다르자, 하인이 멘 짐 위에 있던 침구를 뉘아채며 말했다. “짐을 지느라 수고했소.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갖고 가리다.” 구씨가 그를 제지했다. “이것은 내 침구인데 어디로 가져가는 거요?” 두 사람이 서로 옥신각신 다투며 벽살잡이를 한 채 관아의 공당으로 들어갔다. 용오가 말했다. “이것은 제 침구인데 그가지기 거라며 다투었습니다.” 구씨 또한 말했다. “이것은 제 물건입니다.” 지부가 말했다. “너희들이 서로 다투는데 무슨 표식이라도 있느냐?” 용오가 말했다. “제 침구에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침구를 펴 확인해보니 용씨가 갖고 있던 도장과 같았다. 지부가 말했다. “이것은 용오의 물건이 맞다. 구씨는 어찌서 감히 남의 물건을 네 것으로 사칭하는가?” 구씨는 곤장 열 대를 맞았고, 용오는 침구를 차지했다. 구씨가 욕을 했다. “이 도둑놈아, 넌 누구냐? 감히 날 속여? 반드시 네게 보복하리라.” 용오가 말했다. “방금 배에서 내가 말했던 악당이 바로 나다. 네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온종일 나를 악당이라 부르느냐? 그래서 내가 널 한수 가르친 것이다. 악당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걸!” 구씨는 후회했다. “내가 함부로 남에게 악담을 했다가 이런 화를 입게 되었구나.”<sup>39)</sup>

이 이야기의 목적은 독자에게 ‘말조심’의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용오라는 ‘조민(刁民)’이 등장하는 것이 흥미롭다. 그를 소개하면서 ‘모법 건송(侮法健訟)’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흔히 말하는 ‘송꾼’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는 단순히 도장 찍는 일 하나로 간단하게 상대방을 법정에서 곤경에 빠트렸을 뿐 아니라 손가락 하나 대는 일 없이 ‘법률에 따라’ 상대방을 처벌받게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그리 값나가는 물건도 아닌 침구를 둘러싼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서슴없이 관아에 들어설 만큼 관아의 문턱이 낮았다는 것이다. 관아 이외에 그들을 중재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도 그들이 결국 관아에 간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상인은 직업상 익명성의 사회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농촌공동체처럼 그들을 보호하고 규제할 일종의 공동체의 부재는 다른 어떤 직종이나 사회적 신분보다도 ‘호송’의 경향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인다.

39) 十一類 強搶騙 「私打印記占鋪陳」, 『杜騙新書』.



그러나 마을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도 무고를 막기는 어려웠다. 전체 지배사회에서 무고는 '무송'의 이념을 파기하고 사회정의와 법질서를 왜곡하는 중범죄로 인식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한 범죄였기에 전체지배와 소송의 관계를 재고하게 만드는 범죄였다.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마을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녀에게는 감주(甘澍)라는 스무 살 난 외아들이 있었다. 그는 가업을 지키느라 돈을 꾸어주는 일을 꺼렸다. 이웃에 노오(路五)라는 사람이 그에게 두 차례 은자와 곡물을 빌리러 왔으나, 노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의 원한을 사게 되었다. 그는 아내 호씨(胡氏)와 상의해 감주가 호씨를 강간했다고 무고하기로 했다. 노오는 또한 막역한 친구인 지구(支九)를 증인으로 세웠다. 노오는 분순도(分巡道)에 나아가 고소했다. 도대(道臺)가 직접 심문했다. 먼저 호씨에게 물었다. “감주가 네 집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호씨가 대답했다. “감주는 집안이 부유해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오로지 여자들과 음탕한 짓을 일삼기 일쑤입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것을 알고는 저를 희롱하러 왔습니다. 제가 따르지 않자 억지로 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에게 욕을 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지구가 저희 집에 들르자 감주가 도망갔습니다.” 다시 지구를 심문했다. “너는 노오 집에 왜 갔느냐?” “소인과 노오는 장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데, 물건을 사러 갈 약속을 하러 그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안쪽에서 부인이 욕하는 소리가 들렸고, 또한 감주가 도망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감주에게 물었다. “너는 왜 부인과 언쟁을 했느냐?” 감주가 대답했다. “저는 그의 집에 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말다툼을 벌이겠습니까? 노오의 이웃에게 물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웃이 이구동성으로 감주는 과부의 아들인데 평소 비행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부녀자와 음란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는 사실을 날조해 그를 모해하려는 수작이라고 말했다. 노오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는 거부(巨富)이니, 증인 두 사람을 매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웃이 말했다. “우리들 모두 이웃으로 이런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길 건너편에 사는 저 지구라는 놈은 어찌서 매수당하지 않고 증인으로 선단 말입니까?” 도대가 말했다. “노오는 가난하니 어찌 사람을 매수할 수 있겠느냐?” 이웃과 감주는 곤장 이십 대를 맞았고, 감주는 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도대는 그날 업무가 끝난 후 후원을 거닐며 끝물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들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틀렸다! 틀렸어!” 이때 파수꾼 도산(涂山)이 바깥에서 도대의 혼잣말을 엿듣고는 그것이 감주의 강간사건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아챘다. 그는 깊은 밤 담장을 넘어 감주가 구류된 헐가(歇家)로 가서 그를 만났다. “오늘 일을 청탁할 생각이 있느냐?” 감주가 말했다. “청탁할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해보겠습니다.” 도산이 말했다. “마침 도대의 처남이 오셨는데, 사흘 안에 떠나실 것이다. 이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분께 청탁을 넣는다면 내일 당장 재심해 승소할 수 있다.” 감주가 말했다. “좋습니다. 은자가 얼마 필요합니까?” “이런 번복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할 수 없으니, 은자 백냥은 주어야 한다.” 감주가 말했다. “백냥을 주겠으니 내일 재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도산이 말했다. “처남 어른의 술자리가 아직 파하지 않았으니 내가 당장 말해보겠다.”

도산은 다시 담장을 넘어 들어왔다.

다음날 일찌감치 강간사건을 제심했다. 감주는 크게 기뻐하며 과연 효험이 있다고 여겼다. 오후에 감주를 다시 심문했다. “노오가 네게 돈을 빌린 일이 있느냐?”, “그가 두 차례 은량과 곡식을 빌리러 왔으나 제가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한을 품고 저를 무고한 것입니다.” 호씨를 다시 심문했다. “감주가 네 집에 간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강간할 수가 있었는가? 철구(移具)<sup>40</sup>를 가져와라.” 노오는 뇌물을 쓸 여력이 없어서 형리가 호씨의 손가락을 세계 비틀었다. 호씨는 참을 수 없어 실토했다. “강간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돈을 빌려주지 않아 앙심을 품고 고소했습니다.” 또한 노오와 지구도 곤장 삼십 대를 맞았고, 감주는 무죄로 석방되었다. 도산이 따라와 돈을 요구했다. 감주가 기꺼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열 냇을 덤으로 주었다. 감주는 처남 어른에게 청탁을 넣은 덕택인 줄로만 알았지, 어찌 그것이 도대가 스스로 반성한 결과일 뿐 도산에게 은자를 사기당한 사실을 알 수 있었겠는가?<sup>41</sup>

위의 이야기에서는 개인적 원한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을 강간죄로 무고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소송을 이용하는 아역(衙役)의 기발한 수법을 소개하는 데 있지만, 상대방을 무고한 당사자는 놀랍게도 자신의 아내가 강간당했다는 불명예조차 감수한다. 이 정도라면 ‘호송’ 또는 ‘건송’ 사회라 부를 만하지만, 자살이나 타살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살인죄로 무고하는 ‘도뢰’사건에 비하면 이런 사건은 오히려 약과라고 할 수 있다.

강간사건은 중죄로 처벌되었기에, 다음 이야기처럼 자기도 모르게 조작된 강간사건에 연루된다면 빠져나가기는 어려웠다.

절강(浙江) 소흥(紹興) 사람인 마자명(馬自鳴)은 원래는 교활한 사람으로 걸으로는 유순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여러 가지 간교한 속임수를 썼다. 그의 집안사람 중에 족제(族弟) 마응린(馬應麟)이 있었는데 경박하고 우매한 사람이었지만 마자명보다 집안이 부유했다. 마응린의 아버지와 마자명의 아버지는 원래 사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걸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마자명은 마응린이 우둔하고 술 마시길 좋아하는 걸 알고는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말썽을 일으켰다. 따라서 마자명과 마응린은 서로 ‘막역한 친구’라 일컬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싫어했다. 마응린은 평소에 친형과 사이가 좋지 않아 관아에 그의 형을 고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마자명은 걸으로는 말리는 척 하면서 교묘하게 그의 화를 복돋워 관아에 형을 고소하게 했다. 마응린은 오히려 친형을 구타한 죄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뇌물을 제공한 후에야 비로소 풀려날 수 있었다. 이것이 꽤가망신의 시작이었다. 이후로

40) 손가락 사이에 끼워 손가락을 비트는 형구.

41) 十五類 衙役騙 「入聞官言而出騙」, 『杜騙新書』.

마자명은 마응린이 다른 사람과 소송을 일으키도록 부추겼고, 마응린의 집안은 나날이 피폐해졌다.

어느 날 마자명은 한 가난한 소작농 집에 빚을 독촉하러 갔다가 그 집 며느리가 젊고 예쁜 걸 보고는 또 응린을 부추겼다. 마자명은 그녀가 서시(西施)에 비할 만큼 예쁘다는 등 옷은 낫으로 그의 희롱을 받아주더라는 등 다만 그녀 남편과 시어머니가 걱정이라는 등 이 일이 발각되면 맞아 죽을까봐 걱정이라는 등 따위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자 마자명은 소작농이 감히 주인을 때리는 법은 없다며 그가 직접 나설 기세였다. 이튿날 그는 전조(田租)를 받는다는 핑계로 그 집에 가서 시어머니를 내보내고는 며느리를 억지로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며느리가 이웃집 여자가 훔쳐본다며 머뭇거렸지만, 그는 사양하는 뜻인 줄로만 여겼다. 한참 동안 서로 뒤엉켜 있던 중에 시어머니가 돌아왔다. 며느리가 주인이 자신을 덮쳤다고 말하자 시어머니가 욕을 퍼부었다. 화가 난 마응린은 오히려 소작농이 주인을 폭행했다며 관아에 고소했고, 그러자 소작농은 주인이 며느리를 강간했다고 고소했다. 관아에서 조사해보니, 이웃집 여인과 시어머니가 증인이었다. 관아는 강간죄를 인정해 마응린에게 사형을 판결했다. 마응린은 뇌물로 술한 돈을 써서 겨우 강간미수죄로 고쳐 목숨을 건졌지만, 가산을 완전히 탕진한 뒤였다. 그는 전답과 가옥 모두를 자명에게 팔았다. 마응린이 땅을 다 팔자 마자명은 그와 왕래를 끊었다. 남에게 빌어먹는 신세가 되어서야 마응린은 어쩔 수 없이 친형을 찾게 되었으니, 비로소 가족이 중요하고 술친구와의 우정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sup>42)</sup>

강간사건의 증인이 증언하자, 마응린은 사형 판결을 받는다. 화자는 증인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 증인이 있는 경우 강간죄는 사형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미혼의 딸과 객상의 연애사건을 강간사건으로 조작하고자 하는 ‘간아(姦牙)’ 이야기에서는 간악한 아인 부부의 입을 빌려 놀라우리만치 정확한 법률지식을 제공한다.

노삼(廖三)이 말했다. “안 돼. 무릇 아내와 외간남자가 사통(私通)하는 현장에서 그들을 잡아 죽이면, 관아에 고소하더라도 법률에 무죄로 인정된다. 이 경우는 딸과 외간남자가 간통한 것인데, 둘 다 죽이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객상만 죽이는 것도 그의 죄가 죽을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어찌 죽이고 나서 할 말이 있겠는가?…….”<sup>43)</sup>

『두편신서』는 항상 소송의 폐해를 경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의

42) 五類 僞交騙, 「激友訟奸以敗家」, 『杜騙新書』.

43) 十七類 姦情騙, 「姦牙人女被脫騙」, 『杜騙新書』, 263쪽.

예에서 보듯이 소송절차와 사법제도에 대한 세밀한 묘사, 법률조항에 관한 지식, 장부, 세표, 계약문서와 같은 증거의 중요성 등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데 결코 소홀하지 않다. 그만큼 당시 상인을 비롯한 소시민의 세계는 소송이 ‘몸 가까운’ 사회였던 것이다. 『두편신서』의 주인공들은 대개 소송을 꺼리지 않았으며, 관아의 문턱도 현실보다 훨씬 낮은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계층보다 법률에 익숙한 이들은 자신의 법률지식을 이용해 서슴없이 사법제도와 이념을 왜곡하고 조롱하기조차 한다. 이에 비해 관아 및 지배층의 태도는 ‘무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억압하고 혐오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부모관(父母官)’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청송’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지배층은 소송이 필요악임을 어느 정도 인정했고, 이것이 바로 관아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 IV. 맺음말

앞에서 우리는 『두편신서』를 통해서 후마 교수 등이 제기한 ‘소송사회론’과 상업경제 및 도시사회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화자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두편신서』의 등장인물들은 소송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두편신서』는 전제지배와 소송의 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그러나 필자가 볼 때 『두편신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두편신서』에 표현된 피지배층의 법률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송사회론이 주장하듯이, 『두편신서』에서 우리는 ‘법률에 의한 일방적 지배’와는 정반대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이 또한 살인사건에 중점을 둔 공안집에서는 찾기 어려운 근거들이었다. 『두편신서』는 전근대 동아시아사회의 법률이 철저하게 전제지배와 사회통제의 수단이었다는 생각이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벤담이 말한 것처럼 ‘대중을 위해 만들어지고 이용될 수 있는 인간적 기획’으로서의 법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대중에게 법률은 일상의 경계 안에 존재했다. 결론적으로 중국 소송사회의 연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소송사회의 연구에서도 『두편신서』는 전제지배와 소송의 메커니즘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張應俞 撰, 『杜騙新書』, 古本小説集成 卷224.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_\_\_\_\_, 紀凡 譯註, 『新刻江湖杜騙術』.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5.
- 박명진, 「『杜騙新書』의 제재 유형과 저널리즘적 글쓰기」. 『동아인문학』 20, 2011, 305-342쪽.
- 박영철, 「중국소송사회와 전제지배」. 『역사학보』 214, 2012. 6, 329-372쪽.
- 서정민, 「『흠흠신서』의 도뢰 사례 고찰」. 『다산학』 20, 2012. 6, 113-159쪽.
- 심재우, 「조선 후기 소송을 통해 본 법과 사회」. 『동양사학연구』 123, 2013. 6, 87-119쪽.
- 오금성, 「무뢰」.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 이화승, 「상업」.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 정약용 지, 박석무·정해림 역주, 『역주 흠흠신서』 1. 현대실학사, 1999.
- 홍성화, 「명대 후기 상업서를 통해서 본 객상의 윤리의식-『士商類要』·『客商一覽 醒迷』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56, 중국사학회, 2008. 10, 129-169쪽.
- 唐力行, 『商人與中國近世社會』. 北京: 商務印書館, 2003.
- 夫馬進 編, 「明清時代の訟師と訴訟制度」. 梅原郁 編, 『中國近世の法制と社會』,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3.  
\_\_\_\_\_, 『中國訴訟社會史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1.
- 傅衣凌, 『明清時代商人及商業資本/明代江南市民經濟試探』. 北京: 中華書局, 2007.
- 費孝通, 『鄉土中國』. 上海: 觀察社, 1948.
- 寺田浩明, 「權利と冤抑-清代聽訟世界の全體像」. 『法學』 61.5, 1997.
- 牛建強, 「晚明短篇世情小説集『杜騙新書』版本考」. 『文獻』 第3期, 2000.
- 滋賀秀三, 『中國法制史論集』. 東京: 創文社, 2003.  
\_\_\_\_\_, 『清代中國の法と裁判』. 東京: 創文社, 2009.
- 足立啓二, 「明末の流通構造: 『杜騙新書』の世界」. 『文學部論叢』 41, 熊本大學文學會, 1993, 31-57쪽.
- 黃霖, 「『杜騙新書』與晚明世風」. 『文學遺產』 第1期(1995), 92-102쪽.
- Dorothy Ko, *Teachers of the Inner Chambers: Women and Culture in Seventeenth-Centu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 Jethro K. Lieberman, *The Litigious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1983.
- Lucille Chia, "Appendix B." *Printing for Profit: The Commercial Publishers*

- of Jianyang, Fujian(11th-17th Centu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2.
- Melissa Macauley, *Social Power and Legal Culture: Litigation Masters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Patrick Hanan, *The Chinese Vernacular St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Philip C. Huang, *Civil Justice in China: Representation and Practice in the Qing*.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 Robert E. Hegel and Katherine Carlitz, *Writing and Law in Late Imperial China: Crime, Conflict, and Judgment*.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7.
- Timothy Brook, *The Confusions of Pleasure: Commerce and Culture in Ming China*.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 국 문 요 약

이 글에서는 최근 후마 스스무(夫馬進)와 같은 중국사 연구자가 제기한 ‘소송사회론’을 논의의 단초로 삼아 17세기 초 명말(明末)에 출판된 『두편신서(杜騙新書)』를 분석했다. 『두편신서』는 주로 복건(福建) 지방에서 활동한 상인들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횡행한 사기 범죄를 다루는데, 특히 사기꾼의 행태와 범죄 유형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양식, 이동경로, 그네들을 위한 실용주의적 지침 등을 세밀하게 묘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글에서 말하는 ‘소송사회’란 ‘litigious society’를 번역한 개념어로, ‘소송사회’의 대표적인 예라면 바로 현대 미국사회를 들 수 있다. 최근까지도 현대 미국사회의 대극에 위치한 사회가 구중국(舊中國) 사회라는 인식이 학계에서는 일반적이었지만, 전근대 중국사회의 실상이 ‘무송사회’와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현대 미국사회와 비교할 만큼 소송이 빈발한 사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사한 사법제도를 바탕으로 ‘무송(無訟)’이라는 법률 이데올로기를 추구 하던 전통 시기 중국과 조선(朝鮮)에서 ‘소송사회’의 양상이 나타났음을 고려한다면, 소송사회론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법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상업 및 화폐경제에 의존한 명말 도시민의 세계를 주요 무대로 그려낸 『두편신서』는 전근대 소송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확실히 주목할 만한 책이다. 『두편신서』의 세계는 ‘상호의존성’이 강화되어가는 사회였으며, 향촌을 배경으로 한 폐쇄적·자급자족적 마을공동체와는 정반대의 사회였다. 이러한 사회 변화가 바로 전근대 소송사회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두편신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두편신서』에 표현된 피지배층의 법률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편신서』의 주인공들은 대개 소송을 꺼리지 않았으며, 관아의 문턱도 현실보다 훨씬 낮은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계층보다 법률에 익숙한 이들은 자신의 법률지식을 이용해 서슴없이 사법제도와 이념을 왜곡하고 조롱하기조차 한다. 이에 비해 관아 및 지배층의 태도는 ‘무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억압하고 혐오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두편신서』는 전근대 동아시아사회의 법률이 철저하게 전제지배와 사회통제의 수단이었다는 생각이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중국

소송사회의 연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소송사회의 연구에서도 『두편신서』는 전제지배와 소송의 메커니즘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투고일 2014. 12. 20.

심사일 2014. 2. 14.

게재 확정일 2014. 3. 6.

**주제어(keyword)** 『두편신서(杜騙新書)』(the *Dupian xinshu*), 소송사회(訴訟社會, litigious society), 무송사회(無訟社會, non-litigious society), 사기죄(詐欺罪, fraud), 사편술(詐騙術, fraud), 상업(商業, commerce), 객상(客商, merchant)



### Litigation and Society: The Aspects of Late Ming Litigious Society Represented in the *Dupian Xinshu*

Park, So-hyeon

The main attempt in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upian xinshu* 杜騙新書 (New Book on Frauds and Scams) published in the late Ming on the basis of the discourses on “litigious society,” recently discussed by Chinese historians such as Fuma Susumu. The main concern in the *Dupian xinshu* is with the crimes of frauds and scams. In particular, while depicting the crimes, the book also focuses on the portrayal of merchant classes or the middle classes dwelling in urban areas. The prominent example of “litigious society” is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Until recently have a number of legal historians claimed that litigations were suppressed by the imperial Chinese government so hard that ordinary people preferred to resolve disputes by mediation rather than by going to court. On the other hand, however, some records such as the *Dupian xinshu* clearly show that the Chinese were extremely litigious. Considering the litigiousness of traditional Confucian society such as imperial China and Joseon Korea, in which the ideal of “no litigation” was firmly supported and pursued by Confucian elites, the discourses on “litigious society” will provide us with a new understanding of East Asian legal culture. The *Dupian xinshu* seems remarkable on the ground that the book sheds light on the varied aspects of litigious society through the portrayal of late Ming urban society, in which people rely on market and money economy. The world portrayed in the *Dupian xinshu* became more and more interdependent, apart from rural society centering on the closed self-reliant community. This kind of social change was the background for premodern “litigious society.” Furthermore, I think the most valuable in the *Dupian xinshu* should be the popular perception of law expressed in it. The book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 assumption of traditional East Asian law as a mere tool for autocratic social control is seriously erroneous.